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20	직원	주택문제 해결	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	법령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<p>○ 이전기관 종사자(1세대 1주택자)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단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, - 이전할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-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연장(다른 주택 취득일부 터 1년에서 2년)</p>		<p>소득세법시행령제 155조 16항</p> <p>혁신도시특별법 제48조 제1항</p>	06.02.09	○ 소득세법시행령 공포 및 시행(제155조 16항 신설)	
소관부처	기획재정부		06.3.14~ 07.1.11	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*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가능	
담당부서	재산세제과		08.11.28	○ 소득세법시행령 개정(제155조 16항) - 1가구 1주택 특례(주택 중복 보유기간 연장) : 현행 2년 → 5년(3년 추가 연장)	